

달성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

의 안	1800
변 호	

제출일자 : 2020

제 출 자 : 달성군



1. 보고이유

달성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기관 만료 도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 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,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계약하였음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

2. 근거법령

- 가.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
- 나.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, 제4조, 제9조

3. 센터운영 현황

- 가. 위 치 : 달성군 옥포읍 옥포로 3
- 나. 운영예산 : 230백만 원
- 다. 운영방식 : 민간위탁
- 라. 수탁기관 : 대구YMCA
- 마. 인 원 : 5명(센터장, 사무국장, 팀장, 연구원2)
- 바. 주요업무
 - (1)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및 달성3색 사업 추진
 - (2) 주민협의체 등 자생조직 및 주민역량 강화교육 운영
 - (3) 마을기업 창업 등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

4.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

- 가. 2019. 10. : 재계약 요청
- 나. 2019. 11. :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(재계약 적정 판단)
 - 심사결과 : 85.8점 재계약 의결(70점 이상시 적격)
- 다. 2019. 12. : 협약 체결(위탁기간 : 2020. 1. ~ 2021. 12.)

5. 향후일정

- 가. 2020. 2월중 : 협약서 공증 및 공보 게재
- 나. 2021. 12월까지 :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

□ **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도시
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)**

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규정에 따른다.

□ **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(정의)**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“재계약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□ **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(민간위탁
대상사무의 기준 등)**

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□ **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(재계약)**

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